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21.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2월 16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2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2021. 12. 1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영등포구의회 공인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추가(안 제2조, 별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우리 의회에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공인 등록 등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항에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로 청인(영등포구의회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과 직인(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으로 구분하고, 직인에 인사위원장을 추가하고,
  - 안 별표 중 직인란에 인사위원장을 추가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

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5
----------	-----

발의년월일: 2021년 12월 16일

발의자: 정선희의원 외 6명

##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영등포구의회 공인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추가(안 제2조, 별표)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장
2. 각 상임위원장
3. 사무국장
4. 인사위원장

제7조 중 “**의정담당주사가**”를 “**의정담당팀장이**”로 한다.

별표 중 직인란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1cm	목인쇄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u>“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u>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p> <p>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회의장인</u></li> <li>2. <u>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인</u></li> <li>3. <u>사무국장인</u></li> </ol> <p>&lt;신 설&gt;</p> <p>③ (생략)</p> <p>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u>의정담당주사가</u>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p>	<p>제2조(공인의 종류) ① ----- ----- -----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각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u>-----.</p>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의장</u></li> <li>2. <u>각 상임위원장</u></li> <li>3. <u>사무국장</u></li> <li>4. <u>인사위원장</u></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 -- <u>의정담당팀장이</u> ----- -----</p>

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	3.6cm	목인쇄
직인	영등포구의회의장인	2.4cm	목인쇄
	상임위원회위원장인	2.1cm	목인쇄
	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	2.1cm	목인쇄

-----  
 -----  
 -----.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	3.6cm	목인쇄
직인	영등포구의회의장인	2.4cm	목인쇄
	상임위원회위원장인	2.1cm	목인쇄
	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	2.1cm	목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 사위원회위원장인	2.1cm	목인쇄